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아르바이트 시간 늘리고 싶어”

〈시간당 6,030원〉

서울캠 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이수형 기자 dltdbd112@khu.ac.kr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골목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취기 어린 음성이 회기동을 떠올 때쯤, 기숙사와 하숙집이 빼곡한 이문동은 조용하다. 그나마 이문동 골목을 밟히고 있던 카페불빛도 사라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편의점 간판뿐이다.

늦은 시간 이문동에 흘로 남아있는 중국인 A. 그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한국에 온지 6개월 밖에 안 돼 한국말이 서툰 그녀는 늦은 시간 드물게 방문하는 손님들 앞에서도 되도록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아르바이트 중에도 놓지 않는 한국어교재는 진뜩 헤쳐 있다.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는 그녀는 우리학교 1학년이다.

A는 아르바이트 시간에 학생기자라며 다가와 알지 못할 말을 캐묻는 남자 때문에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그 남자가 묻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공부하던 한국어교재를 내밀었고, 글을 동원해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대화내용이 주목을 끈다. “시급이 얼마나”고 묻는 기자의 말에 그녀는 4,800원을 말했다. A가 오롯이 뜯 눈으로 밤을 보낸 대가로 받는 돈이 43,200원이라는 말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하면, 그녀가 본래 받아야 할 돈은 최소 75,625원이다. 그런데 A의 말에 따르면 “낮 시간에 일하는 중국인 친구는 4,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A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의 야간수당은 300원인 셈이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지,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묻던 기자는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반복해 묻다, A가 통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사실,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에 온지 6개월 이상 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허가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한국에 온지 4개 월째였던 A의 아르바이트 행위는 불법이다. A는 어찌면 43,200원조차 못 받을지 모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사거리 근방에서 일하는 유학생 B도 비슷한 사정이다. B는 베트남에서 왔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일하는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편의점이 학교랑 가깝고 사장님이 친절해 일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낮에 손님이 많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는 이유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시급을 더 많이 받는 요상한 편의점에서, 그는 일한다. 잘 시간이 없어 강의가 없는 시간을 짬짬이 쪼개어 선점을 자아 하지만 생활비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B는 오히려 “학부에 다니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부럽다”며 “여유가 생긴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일하는 B. 그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000원짜리 시급은 이미 고민거리가 아니다.

불법아르바이트 적발당한 적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만연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학교의 직인이 포함된 ‘시간제취업 확인서’와 함께 근무처, 근무시간, 시급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많은 유학생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 신고서를 하위 기재했거나,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라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넘어, 임금체불·악의적 신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취업’인 것이다. 관련 법

률 상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취업을 알선 혹은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학생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가령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개인의 인식부족으로 부조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C는 B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왔다. 그가 일하는 편의점은 새벽까지 고성이 끊이지 않는 외대앞역 근방 유흥가에 위치해 있다. 술집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야간에 일하는 탓에 그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취객을 상대한다.

그가 그 대가로 받는 시급은 6,000원. 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그는 적은 임금 탓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학교의 확인을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시급 기재란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솔직히 적어내는 것은 곧 업주를 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불법 아르바이트임을 적발당한 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느라 해고당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C는 단지 시급이 적은 것이 억울하다.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하기 힘들고, 다른 업

장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의할 생각은 없다. C는 지금도 적은 임금 탓에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저임금이 굳어지는 셋비퀴를 달리고 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적극적 문제제기 못해

물론, 일부 업주들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C의 고용주는 “위치적인 특성상 외국인을 많이 고용했을 뿐, 저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시급을 준다”고 못 밟았다.

일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는 것에는 제도상의 이유도 한 몫 한다. 신고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데다, 미신고 아르바이트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제’의 흥보도 부족하다. 총유학생회 왕건(무역학 2014) 회장은 “유학비자(D2비자)를 가진 학생들은 한 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데, 생활비 부담이 큰 탓에 20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싶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왕 회장은 “총 유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모

두에게 전달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총유학생회는 오는 23일 변호사조방 법률특강을 연다.

지역 내 시민단체에서 문제해결에 나선 적이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알바노조 경희대분회는 2년 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찍이 문제를 발견했다.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신소진(정치외교학 2013)은 “2014년 조사 당시에도 그 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당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는 외국인재학생이 많았다”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제도이탈이 불가피한 유학생들을 일부 악덕업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바노조 경희대분회는 당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악의적 신고 등으로 일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불이익을 겪을 것이 우려되어’ 문제제기를 포기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부조리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길게는 4년이면 한국을 떠나거나, 아르바이트생 신세를 면하는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탓일까. 혹은 유학생들의 생활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행정제도 탓일까. 근로자의 날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용히 지나쳐갔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은 지금도 골목골목에 흘로 남겨져 있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4 ~ 2007학년 제학생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시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으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트레이닝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4. 면제기준

면제종류	계열	대학	면제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국제어계열, 사회계열	국제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 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 Level2 이상
국제화계열 자연과학계열	국제화계열 자연과학계열	천지정보대학, 물질과학대학 (응용수학과, 물질문화대학,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81 이상	650 이상	57, 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 Level2 이상
	예술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 Level2 이상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출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을 제출한다.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공학인증(AEFE) 대상자는 공학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3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의1	일본어강의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리시아어1	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	초급프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시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 계	내 용	평 가 방 법	학 점	비 고
1단계	독후감평가 (연설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F로 부여	1단계 학점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교제 내용 0~80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1단계 학점 부여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4. 신청기간 : 2016.06.01(수) ~ 2016.06.10(금) 17:00 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신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부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출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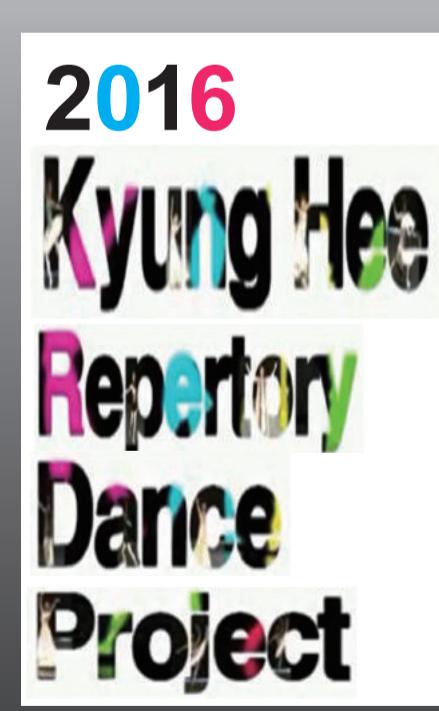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01-3401~5)

7. 제출서류

나. 신청서 1부 (당신은 경희대학교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원본



일시 : 2016. 5. 23(월) ~ 26(목)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